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2022. 12. 16.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목 차

I. 한-인도네시아 CEPA 개요	1
II. 원산지 규정	4
III. 원산지증명	15
IV. 협정관세 적용	20
V. 기타사항	24
[참고]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증명서 서식	27

< 일러두기 >

1. 이 지침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 동반자 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각각 '협정', '법', '영', '규칙', '고시', 라 지칭함
2. 향후 당국간 이행협상 결과 등을 반영한 이 지침의 개정·추가·변경사항이 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공지될 수 있음

I. 한-인도네시아 CEPA 개요

1 적용 범위

- [당사국] 대한민국, 인도네시아공화국
 - (대한민국 영역)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하거나 외측한계선 밖의 해저·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
 - (인도네시아 영역) 영토·영해(내수, 군도수역, 해저 및 하부 토양 포함)·영공 및 국제법과 인도네시아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
- [발효] '23. 1. 1. 발효

※ 협정 제1.1조(일반 정의), 제13.4조(발효), 영 부칙<제31906호, 2021. 7. 27.> 제1조(시행일), 규칙 제2조(정의) 제1호 너목

2 관세 인하 또는 철폐

- 협정 부속서 2-가의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
- 한-아세안 FTA상 ① 관세철폐 대상이었으나 실제로 철폐되지 않은 상호주의 품목, ② 관세철폐 대상이 아닌 민감·초민감품목 (관세감축, TRQ 또는 양허제외 품목) 중 일부 품목 추가 양허
 - [우리측] (품목수) 90.2% → 95.5% / (수입액) 93.6% → 97.3%
 - [인니측] (품목수) 80.1% → 93.0% / (수입액) 88.5% → 97.0%

《 한-인도네시아 CEAP 전체 상품 양허 현황 》

구분	한국 양허				인도네시아 양허			
	품목수(개)		'17-'18년 對인니수입액 평균(천불)		품목수(개)		'17-'18년 對韓수입액 평균(천불)	
전체	12,232		10,365,550		10,813		8,605,052	
한-아세안 FTA	11,032	90.2%	9,697,835	93.6%	8,661	80.1%	7,619,434	88.5%
즉시 철폐	235	1.9%	73,485	0.7%	782	7.2%	414,340	4.8%
(특정용도*)	-	-	-	-	104	1.0%	254,694	3.0%
3년 철폐	93	0.8%	217,498	2.1%	28	0.3%	11,180	0.1%
5년 철폐	50	0.4%	9,642	0.1%	69	0.6%	22,356	0.3%
7년 철폐	10	0.1%	46	0.0%	86	0.8%	43,177	0.5%
10년 철폐	231	1.9%	86,478	0.8%	309	2.9%	182,248	2.1%
15년 철폐	20	0.2%	2,424	0.0%	105	1.0%	50,767	0.6%
20년 철폐	16	0.1%	1,728	0.0%	18	0.2%	329	0.0%
소계	655	5.4%	391,302	3.8%	1,397	12.9%	724,396	8.4%
총합계	11,687	95.5%	10,089,137	97.3%	10,058	93.0%	8,343,830	97.0%

* (특정용도 면세제도) 인도네시아에서 특정 용도로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규격, 등급, 국내 생산여부 등)을 만족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① 자동차·모터사이클 및 그 구성품, ② 전기 및 전자제품, ③ 건설기계 및 중장비, ④ 석유, 가스 및 전력 등 4개 용도

※ [출처] 한-인도네시아 CEPA 상세설명자료

※ 협정 제2.4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 협정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 영 제2조제19항 및 별표17의4

3 관세평가

- 당사국들 간 교역되는 상품의 관세가격 결정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 제1부 및 부속서 I의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

※ 협정 제2.5조(관세 평가)

4 관세 면제 대상 상용견품

- [상용견품] 협정 상대국 영역에서 수입되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품은 원산지과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 허용
 -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물품을 상용견품으로 인정

《 규칙 제30조제6항에 따른 상용견품 》

- ① 견품 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 ②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제2.7조(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품의 무관세 반입), 법 제30조제1항, 규칙 제30조 제6항

II. 원산지 규정

1 개요

-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결정의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규정
 - 당사국 내에서 ① 완전 획득·생산, ②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 ③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생산(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충족)
 - ※ 한-인도네시아 CEP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017 기준으로 규정
- [원산지절차] 원산지증명,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 검증,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해 규정
 - (원산지증명) ① 기관발급, ②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③ 수출자·생산자 자율증명
 - ※ 협정 발효 시점에는 기관발급만 가능하며, 자율증명은 단계적 시행 예정
 - (특혜 적용) 유효한 원산지증명에 기초하여 특혜관세 신청,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 사후신청 가능
 - (검증)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우리나라는 관세당국)을 통한 간접검증, 수출자·생산자 방문 검증 절차 규정

2 정의

-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
 - (생산)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텃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 획득 방법

- (상품)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
- (재료)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구성품, 하위 조립품을 포함
- (생산)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딛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의 획득 방법
- (원산지 상품)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재료
- (비원산지 상품)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함
-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일단 최종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어떤 표시 등에 의해서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상품 또는 재료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말하며,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
- (품목별 원산지 규정) 재료가 세번의 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또는 이러한 기준들이 결합된 기준을 충족함을 명시하는 규정

* RVC와 QVC는 동일한 의미를 가짐

- (본선인도가격(FOB))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소요되는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가치이며, 평가는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름
-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수입된 상품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점까지의 화물운송 및 보험 비용을 포함. 평가는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름
-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운송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 또는 용기가 아님
- (특혜관세대우)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부여된,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에 반영된 관세 양허
- (수출자) 수출 당사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수입자)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생산자)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관세당국)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세법 및 규정의 운영 및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으로 한국은 기획재정부 또는 관세청, 인도네시아는 재무부 산하 관세소비세총국이며 각각 그 승계기관을 포함

※ 협정 제1.1조(일반 정의), 제3.1조(정의)

3

일반 규정

- [원산지 상품]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품을 특혜관세대우 대상이 되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원산지 상품의 종류 》

- ① [완전생산(WO)]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②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 ③ [품목별 원산지기준 충족(PSR)]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되고, 협정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 협정 제3.6조의 누적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정 제3장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함

※ 협정 제3.2조(원산지 기준)

- [완전생산 상품] 다음은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생산으로 간주

《 완전생산 상품 》

- ①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 ②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③ ②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④ 당사국의 영토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또는 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에서 수행된 어로 또는 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 ⑤ 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①부터 ④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그 밖의 천연 자원
- ⑥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 영해 밖의 바다,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 생물. 이 경우 그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바다, 해저 또는 하부 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함

- ⑦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가공선박에서 ⑥에 언급된 상품만으로 생산되거나 만들어진 상품
- ⑧ 당사국의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하부토양으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된 상품. 이 경우 그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함
- ⑨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이 경우 이 상품은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어야 함
- ⑩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그리고 부품 또는 원재료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물품
- ⑪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가) 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
 - 나)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함
- ⑫ ①부터 ⑪까지 언급된 상품으로만 그 당사국 영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협정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품목별 원산지기준]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원재료 조달 편의 등을 위해 일부 품목은 기준 완화

《 한-인도네시아 CEP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현황 》

업종	PSR 구조
섬유·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C, CTH)" ▶ 한-아세안 FTA 등에서 규정된 의류의 추가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 수행) 삭제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 스테인리스강 중 일부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으로 한-아세안 FTA(대부분 RVC45) 대비 완화
기계, 전기·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 한-인도네시아 CEP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017 기준임

※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규칙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및 별표 15의4

□ [역내/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계산] 공제법 또는 집적법

《역내/인정가치포함비율 계산 방법》

▶ **공제법(Build-down)**: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제외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 **집적법(Build-up)**: 상품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와 제조에 사용된 경비 등을 합산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 시 사용되는 용어》

▶ **원산지재료가치(VOM)**: 원산지 재료,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운송비 및 이윤의 가치를 포함

▶ **비원산지재료가치(VNM)**

① (수입된 재료) 재료(부품·상품)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② (당사국에서 획득된 재료)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부품·상품)에 지불된 최초로 확인된 가격

※ 협정 제3.4조(역내/인정가치포함비율의 산정)

□ [세 번 변경 기준] 2단위(CC), 4단위(CTH), 6단위(CTSH) 기준 규정

○ 세 번 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됨

※ 협정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불인정 공정]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영역에서 다음의 공정이 그 자체로만 또는 결합되어 수행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불인정

《 협정 제3.7조에 따른 불인정 공정 》

- ① 운송·보관 중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 ②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 ③ 단순한¹⁾ 세탁, 세척,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④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 ⑤ 단순한¹⁾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⑥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⑦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제조 공정
- ⑧ 단순한¹⁾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 ⑨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⑩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매칭
- ⑪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 ⑫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⑬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²⁾
- ⑭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⑮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 ⑯ 동물의 도살³⁾

(각주1) "단순한"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의미

(각주2)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함.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해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을 말함

(각주3) "도살"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 및 저장과 운송을 위한 보존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장 또는 냉동과 같은 그 이후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함

※ 협정 제3.7조(불인정 공정)

5 특례 규정

- [누적]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에서 특혜 관세대우 자격이 있는 완제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완제품의 작업·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협정 제3.6조(누적)

- [중간재]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중간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함
 - 비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

※ 협정 제3.8조(중간재)

-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상품이라도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최소허용수준 인정 기준 》

- ① 섬유 및 의류(제50류 ~ 제63류)를 제외한 상품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 본선인도 가격(FOB)의 10% 이하
- ② 섬유 및 의류(제50류 ~ 제63류)의 경우에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상품 중량의 10% 이하
- ※ ① 및 ②가 적용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협정 제3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①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적용되는 RVC/QVC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는 포함됨

※ 협정 제3.10조(최소허용수준)

□ [포장 및 포장재료의 취급]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

- (운송·수송용) 상품의 원산지 지위 결정 시 고려하지 않음
- (소매 포장용) 아래에 기준에 따라 적용

《 소매 포장용 포장 및 포장재료의 원산지 결정 방법 》

- ①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해당 상품과 일체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함
- ②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해당 상품과 같이 분류되는 경우에는 상품의 세번변경 충족 여부 결정 시 고려하지 아니함

※ 협정 제3.11조(포장 및 포장재료의 취급)

□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과 함께 인도된 상품의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는 다음 조건에 따라 원산지 지위 결정에 반영

《 원산지 지위 결정 시 부속품 등의 적용 기준 》

- ①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부속품 등을 고려하지 아니함
 - ※ 다만, 부속품 등은 해당 상품과 동일하게 분류되고, 동일한 송장이 발급되어야 하며, 수량 및 가치가 해당 상품 대비 통상적 수준이어야 함
- ②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해당 부속품 등의 원산지 지위에 따라 각각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하여 계산

※ 협정 제3.12조(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 [중립재*]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결합되지 않을 수 있는 아래의 물품은 원산지 결정 시 제외함

*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거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 및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물품

《중립재로 인정 가능한 물품》

- ① 연료 및 에너지
- ② 도구, 형판 및 주형
- ③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 ④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 ⑤ 장갑, 안경, 신발, 의류, 그리고 안전장비 및 보급품
- ⑥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 ⑦ 상품에 결합되지 않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 협정 제3.13조(중립재)

□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원산지 지위 결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한 원산지 인정 기준》

- ① 각각의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관
 - ②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혼합되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사용되는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 판정
- * 다만, 해당 재고관리기법은 해당 회계연도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함

《(참고) 다른 FTA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

- ① **(개별법)**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 ②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 ③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 ④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 이 경우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적용
- ⑤ ① ~ ④ 외에 상품이 생산된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 **협정 제3.14조(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

6 직접운송

- [원칙]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않는 상품은 원산지 지위 불인정
- [예외] 상품이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

- ① 해당 경유가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 되어야 함
- ②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아야 함
- ③ 상품이 하역, 재선적,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수행되지 않아야 함

- [입증서류] 수입자는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의 직접운송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 》

- ①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이는 수출 당사국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상품의 전체 운송 경로를 포함한 운송 문서를 결합한 것을 포함
- ②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이 준수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그 밖의 증명서류

※ 협정 제3.9조(직접운송)

Ⅲ. 원산지증명

1 개 요

- [증명방식] 협정 발효 시점에서는 기관발급만 활용 가능하며, 자율발급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

《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증명 방식 》

- ①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 ②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 ※ 협정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를 통해 규정 및 서식을 합의하고, 수출 당사국이 수입 당사국에 이를 이행함을 통보하는 경우 적용 가능
- ③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 ※ 협정 발효일 후 10년 내에 이행. 다만, 최대 10년까지 이행기간 추가 연장 가능

-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은 발급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적용시점] 협정 발효일('23. 1. 1.) 부터 발급(작성) 가능

※ 협정 제3.15조(원산지 증명), 제13.4조(발효), 영 부칙<제31906호, 2021. 7. 27.>

2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 [신청인]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 [발급기관]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 ※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통상부에서 발급
- [발급형태] ① 종이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② 전자 원산지 증명서*
 - * 전자 원산지 증명서는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EODES)을 통하여 양 당사국간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원산지 증명서 정보를 의미하며, 한-인도네시아 CEPA EODES 개통 시점 및 활용방법은 향후 FTA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 예정
 - (종이 서식 원산지증명서) ① 인쇄본 또는 ② 전자본* 발급 가능
 - * 발급 신청인은 세관 및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승인된 경우 인쇄본 출력과는 별개로 전자본을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음
 - (EODES 유의사항) EODES로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당국 간 교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혜 대우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나, 수입국 세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종이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급절차] 수출물품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제출*
 -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에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발급

- (인증수출자 혜택)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업체별 또는 인도네시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첨부서류 제출 생략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첨부서류 》

- ①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③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④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⑤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소급발급] 비자발적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사유 및 정정 발급 상황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선적일로부터 달력상의 7일 (선적일을 포함)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선적 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ISSUED RETROACTIVELY” 기재

《 (참고) 협정별 소급발급 기준 》

대상 협정	소급발급 기준
아세안, 베트남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인도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중국, 이스라엘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 불포함) 이내에 미발급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선적일로부터 달력상 7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 [재발급]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등본 발급 신청 가능
 - 재발급 원산지증명서에는 원본과 동일한 발급번호, 발급일자와 “CERTIFIED TRUE COPY” 문구 기재
- [정정발급]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발급기관은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 정정 방법 》

- ①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를 무효화하고 신규 원산지증명서 발급
- ② 오류가 있는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 또는 정정사항 기재
다만, 변경된 사항에는 발급기관의 서명과 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정정발급 시 발급기관 제출서류 》

재발급	정정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② 재발급 신청사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② 원산지증명서 원본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원본 제출 조건으로 사본 제출 가능) ③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④ 정정사유 입증 가능한 서류

《 원산지증명서 정정 방법 》

- ①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를 무효화하고 신규 원산지증명서 발급
- ② 오류가 있는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 또는 정정사항 기재
다만, 변경된 사항에는 발급기관의 서명과 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 협정 제3.16조(원산지 증명서), 제3.25조(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규칙 제10조, 고시 제26조~28조

3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법

- [원산지증명서 서식] 규칙 별지 제24호의3 서식 참조
- [작성방법] 원산지증명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 방법에 따라 기재

《 원산지증명서 주요 항목 기재 방법 》

- ① [3번란] 운송수단 및 경로
 - 출발일, 운송수단의 편명, 선적항 및 하역항을 아는 범위에서 기재
 - 다른 협정과 달리 선적항("Port of loading") 정보도 해당 난 기재 대상
- ② [4번란] 비고
 - 가. 비당사국 송장 발급: "NON-PARTY INVOICING" 문구 및 송장 발급 회사의 성명(상호)와 국가 기재
 - 나. 소급발급: 선적일을 포함하여 7일(달력상 날짜)이 경과하고 선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난에 "ISSUED RETROACTIVELY" 기재
 - 다. 재발급: 도난, 분실, 훼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해당 난에 "CERTIFIED TRUE COPY"가 기재
- ③ [7번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 수출상품의 6단위 세 번(수입당사국 기준)을 기재하며, 협정 부속서 3-가를 기초로 작성
- ④ [8번란]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9번란에 기입
가.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협정 제3장에 부합하는 원산지 재료로만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E"
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 물품	
- 세번변경기준 충족 물품	"CC" / "CTH" / "CTSH"
- 역내/인정가치포함비율 충족 물품	"RVC / QVC40"
- 세번변경 또는 역내/인정가치포함비율 충족 물품	"CC" / "CTH" / "CTSH" 또는 "RVC/QVC40"
- 그 밖의 사항	"CC ex" / "CTH ex" / "CTSH ex" 또는 "RVC/QVC40"
라. 협정 제 3.5 조 충족 물품(개성공단)	"Article 3.5"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선택 가능한 원산지결정기준

① WO	② PE	③ CC
④ CC	⑤ CTH	⑥ CTSH
⑦ RVC/QVC40 BD	⑧ RVC/QVC40 BU	⑨ CC ex
⑩ CTH ex	⑪ CTSH ex	⑫ Article 3.5

⑤ [9번란] 역내/인정가치포함비율로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난에 FOB 가격 기재

⑥ [10번란]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하여 송장 번호 및 일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국에서 발급된 송장 원본의 번호와 날짜 기재

※ 협정 부속서 3-나-1, 규칙 제15조제18항 및 별지 제24호의3 서식

IV. 협정관세 적용

1 협정관세 적용 시점

- [적용시점] 협정 발효시점('23. 1. 1. 00시) 이후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
- [경과규정] 아래 경과규정 적용 대상 물품으로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 ('22. 6. 29. 까지)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

《경과규정 적용 대상 물품》

협정 발효일 당시에

- ① 운송 중인 물품이거나,
- ②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이거나,
-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 무역지역에 있는 물품

- (유의사항)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① 협정 발효일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와 ② 직접운송 입증서류 제출

※ 협정 제3.26조(통과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2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시기

- [원칙] 수입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 (제출서류)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
 - (증빙서류) 협정 제3.1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을 포함하여 수입물품이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함
- [예외: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 가능
 - (제출서류) 세관장에게 ①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②수입·납세 신고정정신청서, ③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수입물품은 수입 당시에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 이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
-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발급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함
 - 다만,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계산에서 도착일 다음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제외

※ 협정 제3.18조(특혜관세 대우의 신청), 법 제8조 및 제9조

3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방법

- [관세율 구분부호] 수입신고서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한-인도네시아 CEPA 관세율 구분부호(“붙임”)와 협정관세율을 기재
-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아래 중 하나의 원산지증명을 인정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시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 ① 인도네시아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ion of Origin)
- ②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Declaration of Origin)
- ③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 협정 발효 시점에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만 인정되며, ② 또는 ③의 원산지 신고서로 협정관세 신청 가능한 시점은 별도 공지 예정

-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식]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원산지증명의 형태는 아래와 같음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원산지증명의 형태》

- ① 종이 원본. 다만, 세관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②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PDF, JPEG 등)

《(참고)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양식》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서명)

※ 협정 제3.18조(특혜관세 대우의 신청), 법 제8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

4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 수입 시 본선인도가격(FOB)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 제출을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상품의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의 제출을 면제하지 않음

《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제외 대상 》

- ①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물품 가격이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 ② 해당 수입이 당초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 ③ 상품의 원산지 지위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 협정 제3.18조(특혜관세 대우의 신청), 법 제8조제2항, 영 제4조제3항제1호

5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

- [사소한 불일치]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제출된 원산지 증명과 다른 서류 간 사소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서류상 물품의 동일성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증명의 유효성 인정
- [형식적 오류] 타자 오류 등 원산지 증명의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유발하지 않는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협정관세 적용 거부 사유가 아님

※ 협정 제3.21조(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 규칙 제21조제5항

V. 기타사항

1 원산지검증

- 원산지검증은 무작위 또는 서류의 진정성, 상품의 원산지 지위 및 그 밖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수입국 관세당국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수행

《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방법 》

- ① [수입자 검증]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간접검증 요청 전에 수입자에게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 등 확인
- ② [간접검증]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접검증을 요청받은 수출당사국은 조사요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 통지
 - (추가 정보 요청) 수입당사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추가 정보·서류, 설명 요청 가능하며, 수출당사국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를 제공
- ③ [수출자·생산자 직접검증] ②의 간접검증 결과가 불충분한 경우 협정 제 3.23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을 검증방문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

- ① [간접검증]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검증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 조사요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 통지
- ② [직접검증] 협정 제3.23조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권한있는 당국은 간접검증 이후 수출자·생산자의 사업장 검증방문 가능

※ 협정 제3.23조(검증), 법 제17조~제19조, 영 제11조~13조, 제15조 및 제16조, 규칙 제22조~제25조,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2 협정관세 적용제한

- 세관장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

《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

- ① 협정 제3.9조의 직접운송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 ② 원산지 증거가 처음에 부정하게 수입되었던 상품에 대하여 그 이후 작성된 경우
- ③ 원산지 증거가 이 협정의 비당사국에서 발급되었을 경우
- ④ 수입자가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⑤ 그 밖에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협정 제3.24조(특혜관세대우의 거부), 법 제35조, 영 제44조

협 정	관세율구분부호	내 용
한-인도네시아 CEPA	FID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 적용물품
	FID2 FID3 FID4 FID5 FID6 FID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인 FID1을 제외하고 세율이 높은 순으로 FID2부터 FID7까지 순차 적용
	FID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FID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발동 수준을 초과한 물품